

3. 變形勤務制 導入 推進

- (초점) 現行 勤務時間을 彈力的으로 運營하는 制度 導入 推進
- (배경) 勤務時間을 彈力的으로 運營해야 할 必要性 대두
- (내용) 現在 1週 單位의 勤務時間 限度를 1個月 單位로 변경
- (효과) 生産性 向上, 生産職 勤務形態의 變化, 勤務 時間의 短縮이 豫想 됨

○ 變形勤務制 導入 推進

- 최근 노동부는 노동법개정소위원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의 1일 8시간, 1주 44시간, 1주 12시간 연장근로 인정(근로기준법 제 42조)에 대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변형근로제를 도입하기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

○ 勤務時間의 彈力的 運營 必要性 擡頭

-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측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 대두
- 종업원의 복지차원에서 개인시간의 적극적인 활용기회 확대

○ 1週 單位의 勤務時間 限度를 1個月 單位로 變更

- 현재 1주 4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의 근로시간 한도로 변경시킴
- 특정일, 특정주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정함(1일 4시간, 1주 12시간)
- 사용자에게 의해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 찬성을 받은 대표와 합의해야 함

○ 生産性 向上, 生産職 勤務 形態의 變化와 勤務 時間의 短縮이 豫想됨

- 변형근로제가 실시되면 이미 대기업 사무직에게 확산되고 있는 격주휴무제를 쫓아 생산직에 격주 휴무제가 일반화되고 근로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(예, 3조 3교대 -> 4조 3교대)
-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부담이 줄어들음
-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있으나 생산직의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그만큼 추가 인력 수요가 늘어 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현재 기업 여건상 도입에의 신중한 대처가 요망됨

(전 성 용)